

—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23일, 10월 18일

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개관에 따른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설운영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의 세부기준 제시
 - 목적, 위치, 시설, 업무 및 기능, 운영시간, 시설의 이용, 이용의 제한, 이용료, 시설의 사용 허가 등

라. 참고사항

- 노인복지법 제4조, 제31조, 제36조 내지 제39조
-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3, 제22조 내지 제2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여가선용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